

## 무단산지훼손 및 불법도로 개설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 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지에서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벌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제출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에 따르면 특정 토지에 있는 산림이 벌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 벌금처분으로 법원에 사건 진행 중이며, ○○군에서는 행정지도하였고, 그 외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하였음
  - ※ 통보일자: 2020. 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산지관리법 제55조
- 착안사항: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현장 및 항공사진, 토지용도 확인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확인자료

#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20. 1. 13.)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28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도움으로 ○○의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자1.과 피신고자2.로 추정되는 사람들간의 SNS 대화내용 촬영한 사진, 피신고자2.와 ○○의원 원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간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고자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피신고자에게 벌금 5천만 원 약식기소
    - ※ 통보일자 : 2021. 6. 14.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착안사항 : SNS를 작성한 사람들과 녹음파일에서 통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러한 자료들이 범죄의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

### 1. 의안개요

- 병원에 내방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 등을 재사용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도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청 : 의료기관 시정명령,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 ※ 통보일자 : 2020. 2. 18.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4조 등
- 착안사항 : 의약품 등을 재사용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

#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의혹

1분과위원회(2020. 2. 10.)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86호

## 1. 의안개요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제조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전국의 지점을 통해 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피신고자의 해당 제품 판매내역)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의료기기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처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의료기기법 관련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중지, 회수 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
    - ※ 통보일자 : 2020. 6. 8.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2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1분과위원회(2020. 2. 1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제약회사인 피신고자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불법 리베이트 지급 담당자, 지급 내역, 지급유형 등)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약사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처, ○○위원회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주무부처 행정처분 요청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4. 7.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3, 공정거래법 제2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 명품수선업체의 상표법 위반 의혹

분과  
2020-88호

1분과위원회(2020. 2. 1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명품수선업체인 피신고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선을 의뢰받은 물건과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원단, 상표 등을 이용하여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을 제작·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명품 브랜드 상표 인쇄 원단, 제품 제작도, 제작 완료 제품)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상표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21. 2. 23.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상표법 제10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 1. 의안개요

- 노래방운영자들은 노래연습장업 운영 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피신고자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광역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5. 25.
-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착안사항 : 노래방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여부가 확인되는지 여부

# 의료기기 제조 정지기간 중 제조행위 등 의혹

분과  
2020-137호

1분과위원회(2020. 2. 24.)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의료기기 제조 업무 정지기간 중 다른 회사에 의료기기 제조 위탁 등을 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 제조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기를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생산일보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처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인증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행정처분(제조업무정지)기간 동안 제조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 ※ 통보일자 : 2020. 6. 8.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 등
- 착안사항 :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기 제조 위탁을 하여 제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 일대의 건물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숙박업소 광고 플랫폼에 게시된 홍보글, 도내 숙박업소 현황목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고발조치 및 행정지도
  - ※ 통보일자 : 2020. 3. 26.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의 홍보글, 도내 숙박업소 현황목록

# 약사와 의사의 담합행위 의혹

분과  
2020-193호

1분과위원회(2020. 3. 9.)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판을 설치하여 의사와 약사가 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 8.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4조
- 착안사항 : 약사와 의사가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무자격자인 다른 피신고자에게 재하도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하도급계약서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1. 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96조
- 착안사항 : 재하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건설업 무등록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조회결과

# 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환자 유인 의혹 등

분과  
2020-342호

1분과위원회(2020. 5. 11.)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부당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혹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도 ○○시, ○○공단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 등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 검찰 송치
  - ○○시 : 자격정지 의뢰
  - ○○공단 : 부당청구 내역 조사 의뢰(○○부)
    - ※ 통보일자 : 2020. 8.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착안사항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본인부담금 면제 내역 여부

##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의 원산지 및 KS인증 허위 표시 신고

1분과위원회(2020. 7. 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인 피신고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태양전지모듈을 재포장하고, 이를 피신고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원산지 및 KS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공공사업 및 발전소 등에 공급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재포장 과정을 촬영한 사진, KS인증 심사자료 등)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대외무역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부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인증표시 정지 처분 및 검찰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 2020.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 산업표준화법 제2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모집 알선) 의혹 등

분과  
2020-477호

1분과위원회(2020. 7. 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영업사원들에게 환자 부담금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환자 모집(유인) 및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영업사원들이 모집한 환자 명단, 환자 부담금액, 수당 지급 내역 문서 등으로 보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구, ○○공단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수사 중
  - ○○시 : 환자 유인 행위 등 수사 의뢰
  - ○○공단 : 부당청구액 17,155,250원 환수 예정
    - ※ 통보일자 : 2020. 8. 2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착안사항 : 환자 모집 및 영업사원 수당 지급 여부 등

## 마약류 취급권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20. 7. 2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마약류 취급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일광건조실에 가져왔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대마가 무단으로 반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청, ○○처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청 : ○○처에서 ○○청으로 수사의뢰 하였으며 ○○청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0.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착안사항 : 대마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제약사의 품질기준 미달 의약품 제조·유통 의혹 등

분과  
2020-505호

1분과위원회(2020. 7. 20.)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득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시험계획서 및 결과서, 회사 내부메일 내역 등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를 조작하여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처, ○○지방검찰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지방검찰청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함
    - ※ 통보일자 : 2020. 12. 8.
- 위원회 검토의견
  - ○○지방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93조
- 착안사항 : 시험결과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서 및 결과서, 회사 내부메일 내역

### 1. 의안개요

- 화장품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5톤 탭차를 이용하여 ○○시 소재 본사 하수구에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탭차에 실어 ○○시 본사 하수구에 방류하고 있는 동영상 및 방류위치를 표시한 도면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신고자의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폐쇄명령 및 고발, 하수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320만 원 부과
    - ※ 통보일자 : 2020. 10. 5.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하수도법 제7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폐수 발생여부 및 하수도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 유기식품의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 의혹

분과  
2020-542호

1분과위원회(2020. 8. 3.)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영위하며 유기농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매제품에 유기농 표기 등을 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관할기관의 정식 인증 표시가 아닌 표시를 한 사실 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21. 1. 8.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 착안사항 : 유기농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지에 대한 여부

### 1. 의안개요

- 조립제품제조 업체인 피신고자가 공장 내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수년간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위원회, ○○시의 현장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장 시설(432㎡)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 ※ 통보일자 : 2020. 8. 25.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신고된 도장시설 및 신고 되지 않은 도장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의혹

분과  
2020-592호

1분과위원회(2020. 8. 24.)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등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동영상, 결제 영수증 등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직업안정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 피신고자 범의 혐의 인정하고 증거자료 확보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12. 30.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직업안정법 제47조
- 착안사항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여부

### 1. 의안개요

- ○○항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신고자가 설계에 훨씬 못미치게 자재를 시공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빼돌린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연약지반 개량공사 시공현장을 찍은 동영상, 연약지반 개량공사 시공 기록지, 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고자의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신고자 및 직원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5백만 원 약식기소
    - ※ 통보일자 : 2020. 12.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되, 2021. 1. 12.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관련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영업정지, 시정명령, 벌점부과의 의견 제시함

### 5.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 면허증 대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20. 9. 7.) | 심사보호국장

분과  
2020-627호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거나 의약품 소매행위 등을 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약사면허증 등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시,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 의약품도매상 업무정지 29일, 약사 면허정지 9개월
  - ※ 통보일자 : 2020. 11.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6조 등
- 착안사항 : 약사면허증을 대여받거나 소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1. 의안개요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적법한 변경허가 없이 기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X선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를 허위 기재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허가된 의료기기와 피신고자가 제조·판매한 의료기기 간 비교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의료기기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처, ○○위원회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의료기기법 관련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중지, 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및 주무부처 행정처분 요청
    - ※ 통보일자 : 2020. 3. 30.
  - ○○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관련 위반사항 확인되지 않음
    - ※ 통보일자 : 2021. 1.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 원자력안전법 제5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 등 의혹

분과  
2020-716호

1분과위원회(2020. 10. 2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위험물 등 보관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공장 내에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위험물을 불법 제조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사업장내 불법행위 현장을 상세히 작성한 사업장의 구조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신고자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3. 의결결과

- ○○환경청, ○○도, ○○소방서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여 고발(통보일자 2020. 11. 27.)
  - ○○도 : 일일 360ℓ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사용금지명령 및 고발(통보일자 : 2020. 11. 27.)
  - ○○소방서 :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항을 발견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통보일자: 2020. 1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환경청, ○○도, ○○소방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허가받은 제조소의 위치 및 사용물질, 허가받지 않은 물질 비교 확인

##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20. 10. 26.)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

###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서가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 3. 의결결과

- ○○청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리베이트 제공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1. 5.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7조 등
- 착안사항 :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행위 의혹 등

분과  
2020-769호

1분과위원회(2020. 11. 23.) | 심사보호국장

## 1. 의안개요

- 타인소유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군에 제출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등을 득한 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의혹

## 2. 의결이유

- 청 차량등록소에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본바, 차량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 변경허가 취소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 ※ 통보일자 : 2021. 2. 17.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5. 비 고

- 적용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